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8. 1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 명확화,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간 연장, 시장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축소 등 현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관련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 정확화(안 제8조)

- 고령자의 노후소득 지원을 위해 도입한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정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이를 부부합산 연간종합소득 1,200만원이하인 경우, 전용면적 85㎡이하이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등으로 정하여 재산세 25%를 경감토록 함.

나. 도서관, 과학관에 등에 대한 감면요건 강화(안 제9조)

- 지금까지는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감면하였으나, 도서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하여만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면제

다.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07.4.11)에 따라서 인용조문 정정(안 제11조)

라.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대상 사업 등 규정(안 제11조의2)

- 감면대상사업을 농협중앙회 등의 구매. 판매. 보관. 가공. 무역. 생산. 검사. 교육시설용 부동산 등으로 하고 감면율은 75%로 정함

마.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안 제19조)

- 2007. 12. 31. 감면시한이 완료됨에 따라 2009. 12. 31. 까지 기간을 연장 하고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 전방조종자동차 : 2008까지 66% 감면, 2009까지는 33% 경감
 - 기 타 : 2008까지 33% 감면, 2009까지는 16% 경감

바. 시장 정비사업 감면대상 축소(안 제21조)

-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은 비주거용 부동산에 한해서만 재산세 50% 감면토록 제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 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실시(2007. 10. 19 ~ 11. 20)결과, 의견제출 없음

라.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제9조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을 "각호에서 정하는"으로 하고,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11조제1항제1호 중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를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2조제1항"을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관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

제21조 중 "부동산"을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으로 한다.

제22조 중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p>	<p>제8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이하일 것
<p>제9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5.(생략) 6. 「도서관 및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p>제9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각호에서 정하는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5. (현행과 같음) 6.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p>제11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3. (생략) 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p>제11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 ----- 2.~ 3. (현행과 같음) ② ----- 제47조제1항 -----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19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p> <p>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p> <p>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경감하여 산출한 자동차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p> <p>제21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u>부동산</u>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p> <p>1. ~ 2. (생략)</p>	<p>제11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p> <p>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p> <p>제19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p> <p>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p> <p>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p> <p>제21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 -----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 ----- 1.~2.(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u>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u>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2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 <u>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u> ----- ----- ----- ----- ----- ----- ----- ----- -----.</p>

<관계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1, 2007.1.11, 2007.8.3>

---- 중략 ----

8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라 함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금의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이어야 한다.

【도서관법】

제31조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자료 및 사서직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40조 (등록 및 폐관)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전문도서관을 설립(이하 "사립 전문도서관"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자료 및 사서직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사립 전문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과학관육성법】

第6條 (登錄) ①科學館(國立科學館을 제외한다)을 設立·운영하는 者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科學館의 施設·科學技術資料 및 專門職員에 관한 登錄要件을 갖추어 당해 과학관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登錄할 수 있다. 다만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設立計劃의 승인을 얻어 設立한 私立科學館의 경우에는 竣工후 지체없이 登錄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998.12.28, 2002.12.26>

②第1項의 登錄事項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設立目的
2. 명칭
3. 所在地
4. 設立者 및 代表者의 姓名·住所(法人 또는 團體인 경우에는 法人 또는 團體의 명칭, 主事務所의 所在地와 代表者의 姓名·住所)
5. 施設明細書
6. 科學技術資料의 目錄
7.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③시·도지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科學館登錄證(이하 "登錄證"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2002.12.26>

④第3項의 규정에 의하여 登錄證을 교부받은 科學館(이하 "登錄科學館"이라 한다)이 第2項 各號의 登錄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科學技術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變更登錄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문화재보호법】

제5조 (보물 및 국보의 지정) ①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중요민속자료의 지정)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자료 중 중요한 것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문화재청장은 제5조,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검토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 (문화재의 등록) ①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266조 (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가 구관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률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第196條의5 (課稅標準과 稅率) ①自動車稅의 標準稅率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개정 1990.12.31, 1991.12.14, 1994.12.22, 1995.12.6, 1998.12.31, 2000.12.29, 2005.1.5>

1. 乘用自動車

다음 表의 구분에 따라 排氣量에 시시當 稅額을 곱하여 算定한 稅額을 자동차 1臺當 年稅額으로 한다.

營業用		非營業用	
排氣量	시시當 稅額	排氣量	시시當 稅額
1,000시시이하	18원	800시시이하	80원
1,600시시이하	18원	1,000시시이하	100원
2,000시시이하	19원	1,600시시이하	140원
2,500시시이하	19원	2,000시시이하	200원
2,500시시초과	24원	2,000시시초과	220원